

# **미술사학연구회 회칙**

## **제 1장 총칙**

### **제 1조 (명칭)**

본회는 미술사학연구회라 칭한다.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of Art History, 약칭 : KSAH)

### **제 2조**

본회의 본부는 학회장의 소속기관 내에 둔다.

### **제 3조 (목적)**

본회는 미술사학, 즉 서구에서 학문적 기틀을 마련해온 미술사 연구의 방법론과 동양 및 한국미술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탐구하여, 미술사학 및 미술사연구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 및 학술교류
2. 학술논문집 및 학술서적 발간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 **제 2장 회원**

### **제 5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제3조(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미술사학 및 미술사 분야에서 학문적인 연구 실적이 있는 자.
2. 일반회원 : 제3조(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3.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
4. 단체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연구기관으로서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은 단체.

### **제 6조 (입회 및 제명)**

본회에 정회원으로 입회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정회원은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일반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평생회비를 납부 한 자에게는 평생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3.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 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으로 제명할 수 있다.
  - 가. 회비의 체납이 2년 이상일 때
  - 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총회 의결사항인 각종 의안에 대한 각종 의결권 그리고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 혹은 주관하는 학술대회의 통지를 받고 이에 참여하며, 본회가 발간하는 정기간행 학술지를 배포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회원은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목적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4. 회원은 회칙에 의해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3장 운영기구 및 임원

### 제 8조 (운영기구)

- 본회는 그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두며, 각 기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평의원회 : 회장을 선출하며 정회원 입회 심사 등 학회에 관한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회장 선출은 평의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불참 시에는 출석하는 다른 평의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임원회 : 학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 편집위원회 :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연구윤리위원회 :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 결정한다.

### 제 9조 (평의원)

평의원은 미술사 및 미술이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 전임강사 이상이어야 한다. 평의원은 평생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회원 가입 후 3년 이상 학회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에게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그 자격이 주어진다.

### 제 10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1명
- 편집위원장 : 1명
- 연구윤리위원장 : 1명
- 편집위원 : 10명 내외
- 이사 : 5명 내외
- 간사 : 5명 내외
- 감사 : 2명 내외

### 제 11조 (임원의 권한과 임무)

-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은 권한과 임무를 맡는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을 선정하고 총회를 주관하며, 사업을 집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 수행한다.
  - 이사는 총무, 학술, 사업, 출판, 섭외 각 1인씩 5인까지 둘 수 있고, 각 분과의 운영 실무를 맡으며, 각 분과별로 간사 1명을 둔다. 단, 필요시 부이사를 둘 수 있다.
  - 감사는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주관한다.

## 제 4장 총회

### 제 12조 (총회개최)

본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총회의 종류
  - 정기총회 :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되, 개회일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임시총회 : 회장 혹은 정회원 1/5 이상의 발의에 의해 수시로 열되 그 통지는 정기총회의 경우와 같다.

### **제 13조 (의결)**

총회는 이 회칙 각 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그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당해 연도 사업결과 및 회계결과, 익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기타 재산목록의 승인,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회원의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 본 회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 안건의 총회 의결 정족수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단, 회원은 특정한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 **제 5장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 **제 14조 (학술대회 개최)**

본회는 정기 학술대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 수 있는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제 15조 (학술지 발간)**

본회는 다음과 같이 학술지를 발간한다.

1. 본회는 『미술사학보(美術史學報)』 (영문명: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를 제호로 하는 정기학술지를 연 2회(발행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발간한다.
2. 필요에 따라 특별학술지를 발간할 수 있다.

### **제 6장 편집위원회**

#### **제 16조 (설치목적)**

본회의 학술사업, 특히 학술지 간행 및 학술대회 개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집업무를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 17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학술지 등을 통해 행해지는 본회의 모든 발표 학술논문을 선정하고 학술행사 계획을 심의 의결하며,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제 18조 (편집규칙 등 기타사항)**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학술 논문 투고 및 심사 절차, 편집과 관련된 세부 규칙은 「미술사학연구회 편집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7장 회계연도 및 재정**

#### **제 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다.

#### **제 2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회비, 회원의 찬조금, 기타 후원금 및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 8장 기타**

#### **제 21조**

본 회칙 이외의 일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부칙>**

1. 본 회칙은 발기 총회일(1986.11.29)로부터 발효한다.

2. 본 회칙은 1996년 2월 10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3. 본 회칙은 2000년 11월 13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4. 본 회칙은 2004년 1월 30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단, 제13조(학술지 발간)의 제1항 “본회는 『미술사학보』(영문명: Misulsahakbo—Reviews on the Art History)를 제호로 하는 정기학술지를 연 2회(발행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발간한다.”의 내용은 경과조치로 2004년 12월 31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한다.
5. 본 회칙은 2005년 1월 21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6. 본 회칙은 2013년 5월 11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7. 본 회칙은 2013년 12월 18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8. 본 회칙은 2015년 10월 31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9. 본 회칙은 2019년 12월 11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 미술사학연구회 편집규칙

### 제 1장 총론

####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미술사학연구회 회칙 제6장 제18조에 의거 논문심사 등 편집위원회 운영의 방법, 절차, 기준 등을 정하여 실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장 편집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의결

#### 제 2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학술적 업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며 연구윤리를 준수한 정회원 가운데에서 위촉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제 3조 (회의 개최·의결·회의록 작성)

1.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특별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이 참석,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편집위원은 특정한 경우 다른 편집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4. 모든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보존한다.
5. 편집위원 회의는 필요시 인터넷 등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 3장 편집위원

#### 제 4조 (자격)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 항목 중 적어도 1항의 경력에 준하는 자여야 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전임연구원으로 미술사학 분야를 비롯하여 미학, 예술학 등의 인접학문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문적 업적을 지닌 자
2. 특히 국제적, 전국적 학술대회 및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한 실적 혹은 학술적 저술활동이 두드러진 자
3. 해당 학문의 박사학위 소지자
4. 기타 위의 각 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지닌 자
5. 단, 위의 1, 2, 3, 4항에서 정하는 자격에 준하는 자라 하더라도 연구자의 윤리와 표절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 **제 5조 (위촉절차)**

편집위원은 제4조의 자격을 가진 자 중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되 회장의 동의를 거쳐 인준된다.

### **제 6조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7조 (역할)**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본회 학술사업과 관련된 기획안 심의 결정
2.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표 논문 심사위원 선정
3. 학술대회 및 학술지 논문 발표자 추천
4. 기타 학술 사업에 관한 사항 자문

## **제 4장 학술논문 투고 절차**

### **제 8조 (논문투고)**

본회에서 정기 학술대회 및 정기 간행 학술지 등을 통해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단, 본 편집위원회에 의해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발표를 위촉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논문투고는 미술사학연구회의 회원이여야 가능하다.
2. (이중발표의 제한)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3. 논문 게재료는 심사비를 별도로 하며, 필자의 지위와 연구비 지원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가. 대학 전임 등의 정규직이면서 연구비 지원이 사사 표기될 경우 40만원
  - 나. 대학 전임 등의 정규직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20만원
  - 다. 비전임 혹은 비정규직이면서 연구비 지원이 사사 표기될 경우 30만원
  - 라. 비전임 혹은 비정규직이면서 연구비를 받지 않은 경우 10만원
4. 필자는 소속과 지위를 명기하고, 공동 집필의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해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표를 참조하여 표기한다.

####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5. 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공개 모집한다.
  - 가. 논문 모집 일정 및 절차는 반드시 정기 간행학술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나. 공고의 내용에는 마감일시, 제출처, 편집 심의 일정, 학술지의 발간예정일, 학회의 개최 예정일 등을 밝혀야 한다.
6. 논문투고 및 심사는 본 학회의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명시된 절차와 양식에 따라 진행한다.
7. (논문의 작성언어) 논문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로 하며,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원고지 120매内外와 도판 15매 이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모국어가 영어이거나 영어권에서 활동하는 학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 학술용어는 가능하면 한글로 쓰고 원어는 ( )안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제출원고의 형식)
  - (1) 원고 제 1면에 논문의 제목, 논문작성자 이름, 소속, 연락처(주소, 전화, 이메일)를 한글로 기재한다.
  - (2) 게재 확정된 논문의 연구자는 국문 및 영문초록, 주제어(국문, 영문) 5개 내외, 영문 이름, 근무처, 직위를 논문과 함께 별도의 문건으로 제출한다.
  - (3) 참고문헌은 주제에 인용된 자료에 한한다. 참고문헌은 한글문헌과 외국문헌을 구분하여 저자, 책이름, 출판사, 년도 순으로 작성한다.
  - (4) 기타 투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고작성요령(별지1)에 따른다.
9. (저작권)
  - (1) 학술지 게재 논문의 일체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도판 저작권의 문제는 필자에게 있다.
  - (2) 학회 게재 논문을 인쇄 혹은 전자매체로 재출간, 재수록 시에는 학회에 고지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 제 5장 학술논문 심사

### 제 9조 (투고논문의 심사 방법과 절차)

-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을 전문성에 따라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여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2. 특수전문분야는 해당 편집위원에게 의뢰하고 그 외의 경우 편집위원이 추천하는 심사위원에게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논문심사서」의 형식으로 접수하여 최종 계재 여부 혹은 수정보완 등의 판정을 하고 그 판정결과를 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모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투고 논문의 심의에 소요되는 별도의 경비는 투고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 10조 (심사 기준 및 조치사항)

- 논문의 심사기준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평가는 독창성 및 질, 전문성, 논문의 체계 및 형식, 논문의 기여도, 기타 등을 중심으로 행한다.
  2. 평가 등급은 A부터 E로 나누며 그에 따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 학술논문으로서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됨.
    - B : 학술논문으로서 우수하나 간단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C : 학술논문으로 게재하기 위해서는 내용 및 체재 면에서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함.
    - D : 학술논문으로 게재하기 위해서는 내용 및 체재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여 차기 혹은 차차기 발행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E : 학술논문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됨.

### **제 11조 (최종계재여부 결정 및 논문심사 결과 조치)**

논문의 최종 계재여부 결정 및 심사 결과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결과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계재여부 및 수정 보완 대상을 결정한다.
2. 최종 논문심사 결과는 학회장의 이름으로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별도의 서식에 의거 개별 통지해야 한다.
3. 평가등급이 B, C등급인 경우 투고자에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때 수정·보완된 원고에 한해 계재한다.

### **제 12조 (수정 후 계재)**

1. '수정 후 계재'로 종합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하고 논문수정확인서를 받도록 한다.
2.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사평 및 논문수정확인서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계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수정된 논문에 대해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수정 논문의 수정 정도가 충실하지 않을 경우 계재 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4. 수정 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

### **제 13조 (수정 후 재심사)**

1.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 절차를 밟는다.
2. 재심사를 위해 제출된 논문은 최초 심사위원들이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3. 재심사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 **제 14조 (수정 불이행 논문의 처리)**

1. '수정 후 계재'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투고자가 수정 요구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반론 제시 없이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혹은 기한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계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수정 불이행으로 인해 논문계재가 불가한 경우, 1년 후 논문의 재심사나 계재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기 논문집에 기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신청'임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제 15조 (계재불가 논문의 처리)**

1. 계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2. 계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가 지난 이후 논문을 수정하고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신청'임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제 16조 (이의제기)**

계재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 **제 17조 (계재증명과 연구부정 처리)**

논문계재증명서는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계재가 확정된 후에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계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연구부정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 6장 기타 학술사업의 기획 및 집행**

## 제 18조 (학술사업의 제안 및 자문)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및 그 밖의 학술사업 기획에 자문 및 제안의 권한을 갖는다.

### <부칙>

1. 본 규정은 2000년 11월 20일자로 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1월 30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3. 본 규정은 2013년 12월 18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4. 본 규정은 2015년 10월 31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5. 본 규정은 2017년 3월 28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6. 본 회칙은 2019년 12월 11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7. 본 회칙은 2021년 4월 5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 학술대회 논문발표 및 원고작성 요령

### 1. 논문발표 신청

발표신청은 본 학회의 소정양식인 「미술사학연구회 투고신청서」에 작성하여 본 학회의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2. 논문발표 신청의 제한

- 1) 발표 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투고자 자신이나 타인의 논문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은 것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3) 투고자가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인 경우 투고자 개인정보 제공의 사전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미만]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인 경우를 칭함)

### 3. 학술지 게재원고의 제출내용

- 1) 제목
- 2) 저자의 이름 및 소속과 직위
- 3) 목차
- 4) 본문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 5) 국문초록 (200단어 내외)
- 6) 영문초록 (200단어 내외로 작성하며 그 내용이 국문과 같도록 한다. 이때 제목, 저자의 이름 및 소속을 영문으로 표기한다. 영문초록은 원어민의 감수를 권고한다.)
- 7) 도판 및 도판설명 (각 도판은 300dpi, JPEG 탑입 최대 15개, 1~2MB의 사양 권장하며 초과 시 도판 1개당 5만원, 원고 추가는 인쇄본 기준 1페이지 당 5만원을 필자가 비용 부담)
- 8) 주제어 5~10개 (국문과 영문 병행 표기)
- 9) 참고문헌
- 10) 논문투고일, 심사(수정)일, 게재확정일 (특별기획 심포지엄 논문은 미기재 가능)

#### 4. 원고작성 요령 및 세칙

- 1) 원고는 한글 2005 버전 이상 또는 MS워드로 작성하여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 2) 각 단락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I. 1. 1) ①
- 3) 표기원칙
  - (1) 모든 용어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번역이 곤란하거나 원어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사려 되는 학술 용어 및 고유 명사의 경우 음역하고 괄호 안에 해당 원문의 언어를 병기한다. 단, 영문 또는 유럽어의 경우 『저서』, <작품명>, 《전시명》 안에는 괄호 없이 이탤릭체로 기재한다.
  - (2) 외래어 표기와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립국어원([www.korean.go.kr](http://www.korean.go.kr))의 어문규정에 의거한다.
  - (3) 단, 국립국어원 어문규정의 원음 표기법이 부적절한 경우 원어의 표준 발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 있다.
  - (4) 본문 중 표 또는 도판표시는 괄호 속에 (표1), (표2)..., (도1), (도2)...로 표기한다. 도판설명의 경우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또는 시대, 재료, 크기, 소장도시, 소장처 순으로 표기한다. 단, 소장처 내에 도시명이 포함된 경우 소장도시를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잡지나 온라인 자료에 소개된 작품으로 크기 또는 소장처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잡지나 온라인 자료를 출처로 기재하되, 온라인 출처의 세부사항은 참고문헌에 기재한다.
    - 예) 김홍도, <선동취적(仙童吹笛)>, 1779, 비단채색, 130.7×57.6cm,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예) 장 앙투안 와토, <키테라 섬으로의 순례 Embarquement pour Cythère>, 1717, 캔버스에 유채, 129×194cm, 파리, 루브르 박물관
    - 예) 정현웅, <떠르노보의 일각>, 1956, 수묵화, 『조선미술』 1(1957) 수록
    - 예) 루이즈 아베마, <에트르타 해변 La Plage d'Étretat>, 1908, 엽서, 크기 미상, 출처: 위키아트
  - (5) 기호 표기
    - “ ” : 인용, 대화문
    - ‘ ’ : 재인용(인용문 속의 인용문), 강조, 주요개념
    - 『 』 : 저서, 정기간행물, 신문
    - 「 」 : 논문, 기사
    - < > : 작품명
    - 《 》 : 전시, 공연제목, 연작, 서화첩
    - [ ] : 관련 전문용어
  - (6) 한문 사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는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여 표기하고, 각주에는 한자만 표기한다.
  - (7) 각주 처리방법

모든 註는 각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세부사항을 참고한다.

    - ① 인용문현을 병렬할 경우 문현과 문현 사이는 ; 으로 구분한다.
    - ② 국문 단행본을 인용할 경우 : 저자명, 『단행본의 제목』 (출판사, 발행연도), pp. x-xx.
      - 예) 민주식, 『아름다움, 그 사고와 논리』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p. 20.
    - ③ 국문 논문 및 기사를 인용할 경우 : 저자명, 「글의 제목」, 『간행물의 제목』 권호(발행연도), pp. x-xx.
      - 예) 이인범, 「미술사와 민족국가주의」, 『미술사학보』 31(2008), pp. 6-11.
    - ④ 영문 단행본을 인용할 경우: 저자의 이름과 성, 단행본의 제목 (출판지명: 출판사, 발행연도), pp. x-xx.
      - 예) Hal Foster, *The Return of the Real*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95), pp. 9-10.
    - ⑤ 영문 논문 및 기사를 인용할 경우 : 저자의 이름과 성, “글의 제목,” 간행물의 제목, 권호(발행월, 발행연도), pp. x-xx.

- 예) Linda Nochlin, "Why Have There Been No Great Women Artists?," *Art News*, vol. 69(January, 1971), p. 36.
- ⑥ 국문 번역서를 인용할 경우 : 저자명, 『번역서명』, 번역자명 옮김 (출판사, 발행연도), p. x.  
 예) 안나 모진스카, 『20세기 추상미술의 역사』, 전혜숙 옮김 (시공아트, 2003), p. 58.
- ⑦ 영문 번역서를 인용할 경우 : 저자의 이름과 성, 단행본의 제목, trans. 번역자의 이름과 성 (출판지명: 출판사, 발행연도), pp. x-xx.  
 예) Andrzej Walicki, *A History of Russian Thought: From the Enlightenment to Marxism*, trans. Hilda Andrews-Rusiecka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9), pp. 98-99.
- ⑧ 국내 편집서에 포함된 논문의 경우 : 저자명, 「글의 제목」, 편집자명 역음, 『편집서의 제목』 (출판사, 발행연도), pp. x-xx.  
 예) 조수진, 「알베르토 자코메티: 초기 자코메티 조각과 원시주의」, 윤난지 역음, 『현대조각 읽기』 (한길아트, 2012), pp. 98-99.
- ⑨ 영문 편집서에 포함된 논문의 경우 : 저자의 이름과 성, "글의 제목," in 편집자의 이름과 성, 편집서의 제목 (출판지명: 출판사, 발행연도), pp. x-xx.  
 예) Richard Nash, "Sporting with Kings," in Rebecca Cassidy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orserac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 17-21.
- ⑩ 일간지 및 주간지를 인용할 경우  
 예) 『毎日申報』, 1931. 4. 26.[3].  
 예) Die Zeit, 2000. 5. 4.
- ⑪ 사료를 인용할 경우 : 인용한 사료가 인쇄본이라면 국문단행본을 인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판사, 발행연도, 페이지 번호까지 명시해야 하며 인터넷이나 온라인 자료라면 (9)의 인터넷이나 온라인 자료를 인용하거나 참고했을 경우에 준해 각주를 표기해야 한다.  
 예) “上日……”, 『世宗實錄』 卷84, 世宗 21年 2月 癸未.
- ⑫ 앞에 인용한 책이나 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국문)이나 저자의 성(영문)을 적고, 단행본의 경우 ‘앞의 책’, 논문 및 기사일 경우 ‘앞의 글’이라고 기재하고 해당 페이지를 표기한다. 중복되는 저자일 경우 괄호 안에 발행연도를 보충한다. 바로 앞 각주에서 인용한 동일 책이나 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 ‘위의 책’, 혹은 ‘위의 글’로 한다.  
 예) 민주식, 앞의 책, p. x.  
 예) 이인범, 앞의 글, p. x.  
 예) Foster, 앞의 책, p. x.  
 예) Nochlin(1971), 앞의 글, p. x.  
 예) 위의 책, p. x.
- (8) 참고문헌 처리방법  
 참고문헌은 본문의 각주에서 인용된 자료로 한정하며, 다음의 세부사항을 참고한다.
- ① 국내문헌은 저자명을 기준으로 가나다순으로 하며, 외국문헌은 저자 성의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동일 저자의 논저가 여러 편 게재될 때 먼저 발행된 연도순으로 나열하고, 발행형태(단행본, 전시도록, 논문, 잡지 등)는 구분하지 않는다.  
 ② 국문저서와 논문집명은 『 』로, 논문명은 「 」로 기재한다.  
 예) 민주식, 『아름다움, 그 사고와 논리』,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예) 이인범, 「미술사와 민족국가주의」, 『미술사학보』 31, 2008.
- ③ 영문저서와 논문집명은 이탤릭체로, 논문명은 “ ”로 기재한다.  
 예) Humphry, Ozias and Joseph Mayer. *A Memoir of George Stubbs*, London: Pallas Athene, 2005.  
 예) Nochlin, Linda. "Why Have There Been No Great Women Artists?," *Art*

*News*, vol. 69, January, 1971.

④ 학위 논문의 경우 국문은 「 」, 영문은 “ ”로 기재한다.

예) 이종민, 「韓國의 初期青磁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예) Yen, Shou-chih Issac. "Xu Wei's Zahua: A Study of Genres," Ph. D. Dissertation at Yale University, 2004.

(9) 인터넷이나 온라인 자료

인터넷이나 온라인 자료를 인용하거나 참고하였을 경우 저자, 글의 제목, 사이트 주소, 접속 일시 등 학술 서적이나 논문에 준하는 정확한 출처를 제공한다.

예) Megan Campisi, "What Makes the Great Wall of China so Extraordinary," TED (2015), URL: [https://www.ted.com/talks/megan\\_campisi\\_and\\_pen\\_pen\\_chen\\_what\\_makes\\_the\\_great\\_wall\\_of\\_china\\_so\\_extraordinary](https://www.ted.com/talks/megan_campisi_and_pen_pen_chen_what_makes_the_great_wall_of_china_so_extraordinary) (2019년 4월 1일 접속).

**<부칙>**

1. 본 규정을 2009년 10월 22일자로 개정하여 『美術史學報』 제 33집 (2009년 12월 31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을 2013년 12월 18일자로 개정하여 『美術史學報』 제 41집 (2013년 12월 31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을 2015년 4월 18일자로 개정하여 『美術史學報』 제 44집 (2015년 6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을 2015년 10월 31일자로 개정하여 『미술사학보(美術史學報)』 (영문명: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제 45집 (2015년 12월 31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5. 본 규정을 2017년 3월 28일자로 개정하여 『미술사학보(美術史學報)』 (영문명: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제 48집 (2017년 6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6. 본 규정을 2019년 4월 13일자로 개정하여 『미술사학보(美術史學報)』 (영문명: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제 52집 (2019년 6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7. 본 규정을 2019년 12월 11일자로 개정하여 『미술사학보(美術史學報)』 (영문명: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제 53집 (2019년 12월 31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8. 본 규정을 2020년 6월 17일자로 개정하여 『미술사학보(美術史學報)』 (영문명: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제 54집 (2020년 6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9. 본 규정을 2021년 4월 16일자로 개정하여 『미술사학보(『美術史學報』)』 (영문명: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제 56집 (2021년 6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미술사학연구회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본회의 학술지인 『미술사학보(美術史學報)』의 게재 논문 저자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엄밀성과 윤리성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미술사학연구회의 회원 및 본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예정이거나 게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논문저자 윤리 규정)**

1. 논문 저자는 학문연구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 사기 등의 부정을 행해서는 안 된다.
2. 논문 저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위해 연구자의 소속, 직위 등 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3. 투고 논문의 저자는 본 학회의 소정양식인 「연구자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미술사학연구회는 각 논문의 표절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논문유사도 검색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5. 투고 논문의 저자는 그 연구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1에 해당되는 부정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심의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 가. 위조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나. 변조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 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
  - 다. 표절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 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라. 중복 게재 : 연구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속여서 투고하는 행위. 이미 발표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제 4조 (편집위원의 윤리 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가진다.
2.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모든 논문에 대해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을 비롯한 그 어떤 정보와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 5조 (심사위원의 윤리 규정)**

1.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 충분한 근거를 자세하게 명시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아울러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 6조 (연구 부정행위 처리 방안)**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 가. 제보는 실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 받은 경우에는 익명제보도 포함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검증절차 및 기간

- 가.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통보로 이루어진다. 단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인지하였을 경우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나.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그 기간 내에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 제보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
- 가. 본 조사에서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결정한다.
- 나.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연구윤리위원은 본회의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이 아닌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며, 해당 전문가의 위촉이 어려운 경우 인접 학문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이 위촉한다.
- 라.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에 관련된 개인 혹은 집단에 조사 내용과 결과를 알릴 의무가 있다.
- 마. 조사과정은 기록해야 하며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바. 그 밖의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사. 연구윤리위원회는 발생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해산한다.
4. 결과통보
- 가. 조사결과 통보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하여야 한다.
- 나. 결과통보는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이의신청
- 가. 이의신청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6.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 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다. 조사대상자는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라. 제보자는 연구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 연구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확인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향후 논문 투고 금지(3년 이상)
- 나. 해당 연구에 대한 논문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다. 향후 연구에 대한 특별 관리
- 라. 연구자 공유 정보에 공지

#### <부칙>

1. 본 규정은 2007년 9월 8일자로 제정하고 그 즉시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12월 18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5년 10월 31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1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시행한다.